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90
----------	------

2024년 4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이은림 의원(찬성자: 18명)
-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4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은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 시장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가 수질검사 결과를 현장 이용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토록 함. (안 제5조)
- 시장이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시민이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제61조의2¹⁾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목 차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정의함.

- 1)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 차	주 요 내 용
제3조(시장의 책무 등)	· 시장에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	· 시장에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상시 게시하도록 규정함. · 시장에게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시장에게 수경시설 및 수질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수질검사 요청)	· 시민이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8조(업무의 위임)	· 시장에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²⁾로, 서울시 관내 관리대상은 총 288개소('24.3월 기준)임.([표 2], [표 3] 참조)

[표 2] 서울시 관내 관리대상 수경시설 시설형태별 현황

(2024.3. 기준)

계	바닥분수 (바닥, 벽천 등)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실개천	세족장
288	217	56	11	4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 - 18. (생략)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표 3] 서울시 관내 관리대상 수경시설 운영주체별 현황

(2024.3. 기준)

운영주체	*서울시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민간
288	25	1	211	8	43

* 서울시(25): 광화문광장사업과 6, 공원여가센터 14, 서울역사박물관 1, 서울식물원 1, 미래한강본부 3

* 국가(1): 국립중앙박물관 1

* 공공기관(8): 시설관리공단 3, 물재생센터 1, 서울시설공단 2, 서울주택도시공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 1

- 수경시설 운영자는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³⁾ 및 [별표 19의 2]([붙임1] 참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하고,

[표 4] 수경시설 수질기준

측정항목	수소이온농도(pH)	유리잔류염소	대장균	탁도
수질기준	5.8 ~ 8.6	0.4 ~ 4.0mg/L	200개체수 /100ml미만	4NTU 이하

-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수질검사 결과 등을 작성한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참고로, 서울시는 관내 수경시설 수질검사 소모품 구매, 수경시설 운영자 교육자료 제작 등을 위해 '24년에 약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 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와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에서 수경시설의 신고 처리 및 관리,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업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⁵⁾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본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⁶⁾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라는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③ (생략)

5)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6)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하겠음.

- 참고로, 2024.4월 기준 총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표 5] 참조)에 있음.

[표 5] 타 지방자치단체 수경시설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4.4. 기준)

연번	구분	자치단체	제정일	조례명
1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2019.7.16.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2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1.5.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3		경기도 광명시	2017.8.7.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4		경기도 안산시	2015.4.6.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5		경기도 김포시	2020.12.31.	김포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6		경기도 남양주시	2019.7.1.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

1)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위 관련법과의 연계선 상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략)

2) 시장의 책무와 설치·운영자 교육 관련 (안 제3조, 안 제4조)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 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는 한편,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운영자”)가 시장의 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는 시장이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교육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법 제3조(책무)⁷⁾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물환경 오염 및 훼손 방지, 보전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물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이와 상응하는 조치라 판단되어 바람직하다 여겨짐.

○ 특별히, 안 제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7)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수경시설 수질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설치·운영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한 현행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수질검사 결과공개 관련 (안 제5조)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① 수경시설 설치·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상시 게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한 당월 말일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상시 게시토록 하면서 안내판 등에 게시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시행규칙〔별표 19의 2〕 제2호라목에서 수경시설 운영 기간에는 수경시설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토록 하고 있는데, 본 제정안과 같이 수질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민이 수경시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음.
- 또한, 지난 '23.7월 SBS에서 수경시설 안내판에 게시하는 내용이 수경시설 별로 게시되는 정보가 상이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

래하고 있다는 보도⁸⁾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상시 게시할 정보 등에 대해 가급적 통일성 있게 규정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여겨짐.

- 다음으로,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시장이 수경시설 운영자가 제출한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면서 이를 위해 시장이 수경시설 운영자에게 수질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하고 수경시설 운영자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 시행규칙〔별표 19의 2〕 제2호마목에 따르면 수경시설 운영자가 수경시설 소독방법과 수질검사 결과 등을 적은 관리카드를 운영 중인 연도가 아닌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어 수경시설 수질이나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어도 즉각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기존의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장이 요청하고 확인하면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수경시설 수질의 보다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시민이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수경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SBS, “아이들 자주 찾는데... 바닥분수서 '대장균 기준치 18배'”, 2023.7.29.

4)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안 제6조)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수경시설 및 수질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 자치구는 시장이 제1항의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정보 입력 등 시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는 시장이 수경시설 및 수질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경시설 설치·운영자 및 자치구에서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관련 정보의 입력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토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수경시설의 위치, 규모, 수질검사 결과 등을 수경시설 운영자가 직접 입력하고 이를 시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수경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수경시설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것임.
- 다만,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참조)를 살펴보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계가 어렵다고 평가한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및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수질검사 요청 (안 제7조)

제7조(수질검사 요청) 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안 제7조는 시민이 안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에게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26조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¹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6) 업무의 위임 (안 제8조)

제8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시장이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를 필요시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산된 수경시설을 실시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만, 위임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긴밀한 사전 협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9)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서울시 관내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법에서 수경시설의 신고 처리 및 관리,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업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 본 제정안을 통해 시장이 위임사무를 보다 원활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개정 2019. 10. 17.>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 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 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2. 관리 기준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단, 같은 조례안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4,600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로 서울시 2023년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설명서 첨부(붙임2)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은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9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은림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곽향기,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창진, 박 석,
박성연, 신동원, 윤영희,
이경숙, 이상욱, 이숙자,
이효원, 임춘대, 허 훈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 다. 시장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라.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가 수질검사 결과를 현장 이용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토록 함. (안 제5조)
- 마. 시장이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바. 시민이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 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① 수경시설 설치·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한 당월 말일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수경시설 및 수질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 자치구는 시장이 제1항의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정보 입력 등 시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요청) 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단, 같은 조례안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4,600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로 서울시 2023년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설명서 첨부(붙임2)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회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 계 분 석 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붙임 1] 2024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 추진방법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운영자 교육
- 사업의 주요내용 : 수질검사 소모품 구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 교육자료 제작

[붙임 2] 2023년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1.~2023.12.
- 지원대상 :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중대재해시설 관리 사업장 5개소
- 사업수행주체 : 푸른도시여가국, 사업장
- 추진방법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 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장 콘텐츠 및 의견제공
- 사업의 주요내용
 - 중대재해사업장 작업별, 장소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 위험 시설물 확인 점검
 - 종사자별 안전관리 전달사항 공유체계 구축
 - 종사자 의견 청취 창구 마련
 - 사업장 내 건설공사장 추진현황 관리